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영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.

발의자 : 안영호, 문희성, 박경흠,
김태욱, 강혜순

1. 개정이유

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후생복지사업의 명문화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(안 제6조)
- 나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 용어 정비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3. 11. 20. ~ 11. 27.(7일간) / 의견없음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수립·운영하여야”를 “수립·운영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계·운영함에 있어서”를 “설계·운영할 때”로, “노력하여야 하며”를 “노력해야 하며”로,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노력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및 휴양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
7. 건강검진비(심리상담비 포함) 및 단체보험비 지원
8. 장례서비스 지원

제7조제1항 중 “운영하여야”를 “운영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선택하여야”를 “선택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점수화하여야”를 “점수화해야”로, “부여하여야”를 “부여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사용하여야”를 “사용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</p> <p>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<u>수립·운영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<u>설계·운영함에 있어서</u>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<u>노력하여야</u> 하며,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운영해야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설계·운영할 때</u>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한다.</p>
<p>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후생복지시설 <u>운영</u> 지원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운영 및 휴양비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건강검진비(심리상담비 포함) 및 단체보험비 지원</u></p>

<신 설>

7. (생 략)

제7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

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9조(기본항목) ① (생 략)

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·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.

③·④ (생 략)

제12조(복지점수의 부여기준) ①

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,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.

8. 장례서비스 지원

9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7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

① -----

--- 운영해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기본항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선택해야 -----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복지점수의 부여기준) ①

----- 점수화해야 -----

----- 부여해야 -----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해야 -----
-----.

<p>④ (생략)</p> <p>제13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<u>사용하여야</u> 하며,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사용해야</u>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관 련 법 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
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별도
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의회사무국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이 름: 김 도 언
- 연락처: 290-4245